

목 차

①	법적근거	1
②	관련문서	1
③	교육대상자	1
④	세부 추진계획	2
⑤	교육신청 방법	4
⑥	교육이수증 발급	6
⑦	기타	
⑧	[협조]행정사항	7

[붙임1] 노인인권교육 교육내용

[붙임2]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붙임3] 관계법령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계획 (2019)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2018.4.2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18.9.14.부터) 됨에 따라 우리 시 인권교육계획(집합교육 운영 일정 등) 수립으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도모 함

◆ 인권교육은, 가급적 인터넷교육으로 진행(대면교육*으로도 수강 가능)

* 대면교육 : 집합교육, 방문교육

1]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2] 관련문서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사업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

3]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교육 제외대상자) 설치·운영자·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 다음연도 교

육으로 대체(증빙서 첨부)

④ 세부 추진계획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 10개 군·구(총 6,600여명)

- 집합교육 예상인원 : 5,400명 (회당 300명, 18회)
- 방문교육 예상인원 : 1,200명 (회당 100명, 12회)

○ 노인인권교육 일정 및 교육시간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일정	교육 방법 및 시간	교육기관
2019년 1월 ~ 12월	· 인터넷 교육 (6시간이상)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9년 7월 ~ 12월	·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5시간) ↳ 인권(4시간)+학대예방(1시간)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 교육비 및 강사비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 범위

- 집합교육 :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 방문교육 :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교육비) 집합교육 / 인당 5,000원, 방문교육 / 기관 당 50,000원
- (강사비) 강사 1인 1회당 50,000원 지급 (교육비 징수한 부분에서 지급)

○ 교육내용 (2019년 하반기 노인인권교육 시행)

강좌명	시간	세부내용
노인인권의 이해	60분	- 인권의 역사 및 동향 - 노인인권의 개념 및 이해 -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60분	-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 생활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노인인권 감수성	60분	- 노인의 특성 및 이해 -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차별의 이해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60분	-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 국내외 사례

* 상기 교육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음

○ 교육방법

교육방법	시기	교육내용 등	교육경비	교육장소
인터넷 교육	연중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 총 18회	하반기 시행 (7월~12월)	하반기 총 18회 (월 2회 / 5시간) 1. 노인인권교육 4시간 2. 노인학대예방교육 1시간	일인당 5천원	각 군·구 강당
방문교육		하반기 총 12회 (월 2회) ◆ 5개 기관 100명 이상 신청 시 방문	기관당 5만원	-

ⅢⅢⅢ 인터넷 교육 (교육대상자 개별 신청)

1)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신청 방법

-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 접속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③ 인권배움터 → 사이버교육 → 노인관련시설 클릭
- ④ 노인과 인권(10차시) 과목 선택 및 신청
- ⑤ 교육 수강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신청 방법

-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 접속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3개)

- 1)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활시설 편)
- 2) 노인인권의 첫걸음(노인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용시설 편)
- 3)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 권장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용시설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 진도율 100%+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 교육 및 신청일정

군구별	교육일시	신청일정	장소	인원
부평구	7월 16일(화) 13시	6월 24일(월) 9시-6월 28일(금) / 선착순 마감	부평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0월 30일(수) 13시	10월 7일(월) 9시-10월 11일(금) / 선착순 마감		
남동구	8월 27일(화) 13시	7월 29일(월) 9시-8월 2일(금) / 선착순 마감	남동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1월 28일(목) 13시	11월 4일(월) 9시-11월 8일(금) / 선착순 마감		
미추홀구	9월 17일(화) 13시	8월 19일(월) 9시-8월 23일(금) / 선착순 마감	미추홀구 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2월 12일(목) 13시	11월 18일(월) 9시-11월 22일(금) / 선착순 마감		
동구	7월 4일(목) 13시	6월 10일(월) 9시-6월 14일(금) / 선착순 마감	동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0월 15일(화) 13시	9월 16일(월) 9시- 9월 20일(금) / 선착순 마감		
중구	8월 29일(목) 13시	8월 5일(월) 9시-8월 9일(금) / 선착순 마감	중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1월 26일(화) 13시	11월 4일(월) 9시-11월 8일(금) / 선착순 마감		
연수구	9월 24일(화) 13시	9월 2일(월) 9시-9월 6일(금) / 선착순 마감	연수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1월 15일(금) 13시	10월 21일(월) 9시-10월 25일(금) / 선착순 마감		
서구	9월 4일(수) 13시	8월 12일(월) 9시-8월 16일(금) / 선착순 마감	서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1월 6일(수) 13시	10월 14일(월) 9시-10월 18일(금) / 선착순 마감		
계양구	9월 19일(목) 13시	8월 26일(월) 9시-8월 30일(금) / 선착순 마감	계양구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0월 24일(목) 13시	9월 30일(월) 9시-10월 4일(금) / 선착순 마감		
강화군	10월 22일(화) 13시	9월 23일(월) 9시-9월 27일(금) / 선착순 마감	강화군청 강당	600명/ 회당 300명
	11월 21일(목) 13시	10월 28일(월) 9시-11월 1일(금) / 선착순 마감		
용진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⑤ 교육신청 방법

○ (인터넷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인 신청

○ (집합교육) 관할 군·구 교육 및 신청일정 확인 후, 신청기간 동안 시설에서 교육신청서(붙임 2) 작성 후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메일 발송(→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 확인)

* 군·구별 교육신청기간 상이하니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

* 선착순 접수(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9시 이전 신청 건은 무효 처리될 수 있는 점 참고 요망

· 기관당 20명까지 신청 가능

(→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 인원내 제한을 둔 것으로 양해 바람)

* 신청서에 시설 대표 이메일 주소 필히 작성 요망

(→ 교육 이수증 및 입금 확인증을 교육생이 근무하는 해당 시설 이메일로 일괄 발송)

- * 교육생명단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군·구별 해당 신청일정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공지할 예정)

○ (방문교육) 5개 기관 100명이상 인원이 모집이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교육일정 협의 후 교육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
(→ 교육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지정)

- * 기관 e메일 : icl389@hanmail.net * 기관 전화번호 : 032-426-8792~3
- * 기관 홈페이지 : <http://www.icl389.or.kr> * 기관 팩스 : 032-426-8794
- * 교육신청은 e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 및 구두 접수 불가

※ 집합교육이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될 수 있어 인터넷 교육 수강 독려 요망

○ 입금확인 및 수강료 환불안내

- * 계좌번호 : 신한 100-027-239353(예금주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 * 입금시 주의사항

〈집합교육 - 교육비 인당 5,000원〉

- 입금자명 : (이름+교육일자) 작성하여 입금(→ 교육생 명으로 별도입금)
- 입금기한 : 교육 1주일 전까지 입금확인이 안될 경우 취소됨
(→ 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생명단 확인 후 입금 요망, 아래 교육비 입금 기한 참고)
- 입금확인 : 입금 확인된 **교육생최종명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해당 기관에 **개별 안내**할 예정
- 교육 4일 전까지 환불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3일 전~당일 취소 시 교육일자변경 및 환불은 절대 불가(환불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환불신청은 e메일로만 받습니다.(부득이할 경우, 팩스 제출)
- * 환불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 군·구별 교육비 입금기한

군구별	교육일시	교육비 입금기한
부평구	7월 16일(화) 13시	7월 9일(화)
	10월 30일(수) 13시	10월 23일(수)
남동구	8월 27일(화) 13시	8월 20일(화)
	11월 28일(목) 13시	11월 21일(목)
미추홀구	9월 17일(화) 13시	9월 10일(화)
	12월 12일(목) 13시	12월 5일(목)
동구	7월 4일(목) 13시	6월 27일(목)
	10월 15일(화) 13시	10월 8일(화)
중구	8월 29일(목) 13시	8월 22일(목)
	11월 26일(화) 13시	11월 19일(화)
연수구	9월 24일(화) 13시	9월 17일(화)
	11월 15일(금) 13시	11월 8일(금)
서구	9월 4일(수) 13시	8월 28일(수)
	11월 6일(수) 13시	10월 30일(수)
계양구	9월 19일(목) 13시	9월 11일(수)
	10월 24일(목) 13시	10월 17일(목)
강화군	10월 22일(화) 13시	10월 15일(화)
	11월 21일(목) 13시	11월 14일(목)

〈방문교육 - 교육비 기관당 50,000원〉

- 입금자명: (기관명+교육일자) 작성하여 입금
- 입금기한: 교육 1주일 전까지 입금확인이 안될 경우 취소됨
- 입금확인: 해당 기관에 개별 안내할 예정

⑥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증 발급)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별 인권교육 이수자 일괄 통보(공문 발송)
 - 이수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 교육방법, 이수일자 등)을 첨부
 - 군·구별 교육이 끝나고 한 달 이내 발급 예정

(해당 시설 이메일로 일괄 공문 발송)

○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 재발급 가능

- 인터넷 교육 등 인권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기타

- 교육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주차권 발급 불가)
- 교육당일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 요망

8] 행정사항(군·구

- 인권교육 실시 공문 각 군·구 관할 시설에 발송 및 교육 참여 독려
- <첨부>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에 각 군·구별 교육일정 기입하여 배포요망

<붙임 1>

노인인권교육 교육 내용

이수시간	4시간 이상(필수: 1강좌, 선택1: 1강좌, 선택2: 2강좌)		
이수구분	강좌명	시간	세부내용
필수 (1강좌)	노인인권의 이해	60분	- 인권의 역사 및 동향 - 노인인권의 개념 및 이해 -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
선택 1 (1강좌)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60분	- 인권침해 영역과 범위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등 판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생활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60분	-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 생활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이용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60분	- 이용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 이용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선택 2 (2강좌)	노인인권 감수성	60분	- 노인의 특성 및 이해 -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차별의 이해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60분	-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 국내외 사례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90분	- 치매노인의 노인인권 - 노인복지시설의 공공후견제도의 이해(공공후견 제도의 법적 근거, 공공후견제도 사례 및 실제) - 공공후견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법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